

# 이사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것 이외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 (독립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순(직위가 같은 경우 연장자)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 
<전문개정 2017.12.8.>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6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

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16.4.22., 개정 2019.4.29.>  
<전문개정 2017.12.8.>

## 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과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회일2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4.29.>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  
<개정 2019.4.29.>  
<전문개정 2016.4.22.>

## 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그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.<단서 신설 2016.4.22.>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나.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다. 재무제표 등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<개정 2016.4.22.>
    - 라. 전자적 방법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<신설 2016.4.22., 개정 2019.4.29.>
    - 마. 정관의 변경<신설 2016.4.22.>
    - 바. 자본의 감소<신설 2016.4.22.>
    - 사.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<신설 2016.4.22.>
    - 아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<신설 2016.4.22.>
    - 자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<신설 2016.4.22.>
    - 차.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<신설 2016.4.22., 개정 2019.4.29.>
    - 카. 주식의 액면미달발행<신설 2016.4.22.>

- 타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<신설 2016.4.22.>
- 파.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<신설 2016.4.22.>
- 하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<신설 2016.4.22.>
- 거. 이사의 보수<신설 2016.4.22., 개정 2019.4.29.>
- 너. <삭제 2017.12.8.>
- 더. 법정준비금의 감액<신설 2016.4.22.>
- 러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<개정 2016.4.22.>

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가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나. 이사회 의장,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<개정 2017.12.8.>
- 다. <삭제 2016.4.22.>
- 라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마.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바.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함<단서 신설 2019.4.29.>
- 사.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아.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 등의 선임. 단,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에게 위임<개정 2016.4.22., 2017.12.8., 2021.4.27.>
- 자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<신설 2016.4.22.>
- 차.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<신설 2016.4.22.>
- 카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<신설 2016.4.22.>
- 타.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<신설 2016.4.22.>
- 파.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<신설 2016. 4.22.>
- 하.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<신설 2016.4.22.>
- 거.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<신설 2016.4.22.>

## 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가. 신주의 발행
- 나. 사채의 발행<개정 2016.4.22.>
- 다. 준비금의 자본전입
- 라. 전환사채의 발행
- 마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바. 직전 사업연도 말 회사 연결자기자본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의 취득·처분, 급부 또는 반대급부가 위 금액 이상인 계약의 체결<개정 2017.12.8., 개정 2022.2.8.>
- 사. 직전 사업연도 말 회사 연결자기자본의 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12.8., 개정 2022.2.8.>

- 아. 결손의 처분<신설 2016.4.22.>
- 자. 직전 사업연도 말 회사 연결자기자본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시설·설비의 신설 및 개폐<개정 2017.12.8., 개정 2022.2.8.>
- 차. 연결자기자본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금도입<신설 2016.4.22., 개정 2022.2.8.>
- 카.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<신설 2016.4.22.>
- 타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<신설 2016.4.22.>
- 파. 자기주식의 소각<신설 2016.4.22.>
- 하. 연결자기자본의 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및 증권의 대여, 담보제공, 보증행위<신설 2019.4.29., 개정 2022.2.8.>
- 거.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<신설 2026.5.12.>
- 너.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<신설 2022.2.8.>
- 4. 이사에 관한 사항
  - 가.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<개정 2016.4.22.>
  - 나.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
  - 다.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<신설 2016.4.22.>
- 5. 기타
  - 가. <삭제 2017.12.8.>
  - 나. <삭제 2017.12.8.>
  - 다. <삭제 2017.12.8.>
  - 라. <삭제 2017.12.8.>
  - 마. <삭제 2017.12.8.>
  - 바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업무의 중요사항
  - 사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<신설 2016.4.22.>
  - 아. 중요한 소송의 제기<신설 2016.4.22.>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<개정 2016.4.22., 개정 2019.4.29.>
  - 3. 환경경영 성과 및 주요한 환경 사안(매년 1회 정기 보고)<신설 2025.8.13.>
  - 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제11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정관 제36조의2에 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1. 감사위원회<신설 2019.4.29.>
  - 2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개정 2026.5.12.>
  - 3. <삭제 2019.4.29.>

4. <삭제 2019.4.29.>
  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이사회 의장,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<개정 2017.12.8.>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<단서 삭제 2016.4.22., 단서 신설 2019.4.29.>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4.22.>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<단서 삭제 2017.7.27.>

#### 제12조 (위임)

- ① <삭제 2016.4.22.>
- ② 이사회는 제3조와 제10조 이외의 일상 업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#### 제13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14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15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<개정 2016.4.22., 개정 2019.4.29.>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- ⑤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한다

#### 제16조 (전문가의 조력)

이사회 또는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금융, 회계, 법률,

기타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 
<신설 2025.3.10>

### **제17조 (규정의 제정개폐)**

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### **부 칙**

#### **제1조 (시행일)**

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정관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**

#### **제1조 (시행일)**

제 12 조의 개정내용은 2013년 2월 27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**

#### **제1조 (시행일)**

제 10 조 및 11 조의 개정내용은 회생절차 종결시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2016.4.22.)**

#### **제1조 (시행일)**

위 개정내용은 2016년 4월 22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2017.1.24.)**

#### **제1조 (시행일)**

위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24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2017.7.27.)**

#### **제1조 (시행일)**

위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27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7.12.8.)**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9.4.29.)**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1.4.27.)**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2.2.8.)**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5.3.10.)**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5.8.13.)**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3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6.5.12.)**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5월 12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

제 4 조 및 제 11 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